C - 24 - 2011

- (카) 바닥 개구부 주위 타설시 개구부 덮개, 안전난간, 추락방망, 안전대 부 착설비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타) 야간에 콘크리트 타설시 적합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파) 철근 배근 상부에 근로자 이동시 전도 방지를 위한 통로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하) 고소에 있는 개구부 단부 주변에 추락의 위험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고,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거) 작업자는 적절한 휴식시간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타설 장비 및 기계기구 안전 준수 사항
 - (가) 진동기(Vibrator), 콘크리트 펌프, 압송관 등 타설 기계기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(나) 진동기는 대지 저항이 100Ω이하(3종 접지)가 되도록 접지를 하고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하며, 분전반의 외함접지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- (다) 진동기의 지나친 진동은 측압이 증가하여 거푸집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 - (라) 타설 장비는 시공 장소에 근접하게 설치하되, 평탄하고 바닥이 단단하여 장비 전도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마)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붐대의 급격한 이동 및 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.
 - (바)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고압 가공전선에 대한 감전예방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.